



(붙임 1)

## 임원의 선임 및 사임 내용

###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 범위	주요 경력 <sup>1)</sup>	겸직 사항	자격요건 확인결과 <sup>3)</sup>
기타 비상무 이사	홍은기 (洪銀基)	741120	2021.01.29 [21.01.29(1)]	2022.1.28	기타 비상무 이사	코람코자산신탁 (2008.08~현재)	-	결격사유 해당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 2. 사임

직 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 명 (한자)	해(사)임일	사 유	비 고
대표이사/사장 (상임, 등기)	전응철 (全應徹)	2021.01.31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	

### 3.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

- 2021년 1월 29일 기타비상무이사 홍은기 선임 완료

##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sup>1)</sup>	겸직사항 <sup>2)</sup>	비 고
대표이사 부사장 (상임, 등기)	박형석 (朴炯錫)	671206	2019.5.24 [13.12.16 (4)]	2021.5.24	코람코자산운용 (13~현재) OrionPartners Korea(07~13)	-	-
(비상근)감사 (비상임, 등기)	차순영	601101	2019.3.29. [19.3.29 (1)]	2022.3.28	코람코자산신탁 (19~현재) LF경영지원부문장 (17~19) LF경영혁신본부장 (14~17)	별첨1 참조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송창영 (宋昌永)	710501	2020.3.31 [17.3.31 (3)]	2021.3.30.	코람코자산운용 (17~현재)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14~현재)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13~현재)	-	-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홍은기 (洪銀基)	741120	2021.01.29 [21.01.29(1)]	2022.1.28	코람코자산신탁 (2008.08~현재)	별첨1 참조	-
투자운용 1본부장 전무 (상임, 미등기)	김태원 (金泰沅)	691018	2021.1.1 [16.4.8(4)]	2021.12.31	코람코자산운용 (16~현재) 리치먼드자산운용 (07~16)	-	-
투자운용 1본부장 상무 (상임, 미등기)	최영선 (崔永善)	730207	2021.1.1. [21.01.01(1)]	2021.12.31	코람코자산운용 (12~현재) K&P Investment(01.09~1 2.10)		
투자운용 3본부장 전무 (상임, 미등기)	배도열 (裴度烈)	700510	2020.8.3 [20.8.3(1)]	2022.8.2.	삼성생명보험 기업용자치점장 (93~20.7)		
멀티에셋 운용 본부장 전무 (상임, 미등기)	이재길 (李在吉)	630309	2018.7.16 [18.7.16 (1)]	2021.12.31	코람코자산운용 (18~현재) 유진투자증권(07~18)	-	-
인프라투자 본부장 전무 (상임, 미등기 )	마국환 (馬國桓)	670212	2020.11.19 [18.11.19 (2)]	2021.11.18	코람코자산운용 (18~현재) 산업은행(93~18)	-	-
준법감시인 이사 (상임, 미등기)	박성인 (朴聖仁)	730414	2019.4.22 [11.6.3 (6)]	2021.4.21	코람코자산운용 (10~ 현재)	-	-

[별첨-1]

회사명	구 분	업 종	겸직업무	직 위	겸직기간
코람코 자산신탁	모회사	부동산 신탁업	코람코자산신탁의 사내이사	사장 (경영부문)	2019.3.29 ~ 2022.3.28
코람코 자산신탁	모회사	부동산 신탁업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영부문임원	상무 (경영부문)	2021.1.29.~ 2022.1.28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홍 은 기	직 위	기타 비상무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b>&lt;공통사항&gt;</b>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홍 은 기	직 위	기타 비상무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홍 은 기	직 위	기타 비상무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u>종합 의견</u></p> <p>상기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함</p>			
<p>2021년 1월22일</p> <p>코람코자산운용 임원 홍 은 기 (인)</p> <p>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 형 석 (인)</p> 			